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3 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1월 17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아니된다.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17일 1)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1월 1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신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Ⅰ.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

변경후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
이 투자신탁의	1.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	1.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삭제>

<table>
<tr><td>모투자신탁</td><td>신탁[채권]</td><td></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46</td></tr><tr><td>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 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able></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 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able></td></tr>
<tr><td></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 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가중평균 잔존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70% 이상

(3) 비교지수(Benchmark)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70% 이상

(3) 비교지수(Benchmark)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td></tr>
</table>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7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6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 주)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KOSPI 지수*10%) + (CD금리 * 9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는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1.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1.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삭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가중평균 잔존만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가중평균 잔존만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채권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국내채권 60% 이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삭제>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국내채권 60% 이상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KOSPI지수*10%) + (CD금리 * 9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는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7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6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6.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7.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삭제> <삭제>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td><td>1.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3.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td>1.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성수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주석추가)

다.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td><td>53646</td></tr></table></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td><td>5396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75</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
<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table>
<tr><td>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td></tr>
<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td></tr>
</table>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7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0% 이하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2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80%)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60%)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70% 이상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2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삭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30%) + (CD금리 * 70%)) 이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 퇴직연금장기증권/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장기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41%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5%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8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10%) + (CD금리 * 90%)]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비교지수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KOSPI지수*10%) + (CD금리 * 9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는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8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1.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3.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table>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보수
(생략)</td><td>보수
(업데이트)</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대형우량주, 업종대표주 및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 rowspan="2">70%이상</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20%이하</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20%이하</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td></tr></table></td><td>[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이상</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20%이하</td></tr></table></td></tr>
</table>

	호)[주식]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등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등 <삭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성수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주1) 비교지수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8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1)비교지수: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KOSPI 지수*10%) + (CD금리 * 9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8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41%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 이 1.25%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9.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10.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집합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홍성수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조익환

다.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조익환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오현정

다.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46</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75</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td></tr>
</table>

<table>
<tr><td></td><td>하나UBS 퇴직연금 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퇴직연금 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미만에서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0% 이상</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td><td>20% 이하</td></tr>
</table></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0% 이상</td></tr>
<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40% 미만</td></tr>
</table></td></tr>
</table>

	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40% 미만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60%)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60%)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30%) + (CD금리 * 70%)) 이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 퇴직연금장기증권/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70%)**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장기증권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3.7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3.5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비교지수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60%)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30%) + (CD금리 * 70%)) 이었습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비교지수: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70%)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KOSPI 지수*30%) + (CD금리 * 7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는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 * 6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미만에서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70%)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 및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삭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성수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주1)비교지수 :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1)비교지수: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7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KOSPI 지수*30%) + (CD금리 * 7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KOSPI*30%)+(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5년이하*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만기1년이하*1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3.7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준편차(연율화)]이 **3.5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Balanc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1.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홍성수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오현정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투자대상	펀드코드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3677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BK128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대형우량주 및 업종 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
	등록신청일	2009.4
하나	주요	국내주식 60%이상,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투자대상	펀드코드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BK128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주요 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투자대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업종대표주 및 시장 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업종대표주·대형우량주 등 블루칩 종목군 및 저평가 중소형 주에의 균형(Balance)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 70% 이상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 70% 이상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4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8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업종대표주·대형우량주 등 블루칩 종목군 및 저평가 중소형주에의 균형(Balance)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업종대표주·대형우량주 등 블루칩 종목군 및 저평가 중소형 주에의 균형(Balance)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table>
<tr>
<td></td>
<td>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투자목적</th></tr>
<tr><td rowspan="2">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td></tr>
<tr><td>투자 목적</td><td>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합니다.</td></tr>
<tr><td rowspan="2">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td></tr>
<tr><td>투자 목적</td><td>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td></tr>
</table></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투자목적</th></tr>
<tr><td rowspan="2">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td></tr>
<tr><td>투자 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able></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투자대상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
<td>(2) 투자대상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업종대표주·대형우량주 등 블루칩 종목군 및 저평가 중소형 주에의 균형(Balance)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td>
</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모펀드	**투자전략**	**모펀드**	**투자전략**
	하나UBS 퇴직연금 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본운용방침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으로 장기 자본이득 추구와 더불어 시황변동에 따른 주식 편입비 전략을 병행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기본적 포트폴리오는 업종 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 업종대표주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중소형 우량주식에 대한 균형있는 투자 병행 ■자산배분 전략 기본적으로 주식편입비 90%이상 유지하며 장기 자본이득 추구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주식 편입비 조정 (최저 편입비 60%) ■리스크 관리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투자환경 급변시 제한적 파생상품 활용 RM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하나 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하나 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기본운용방침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으로 장기 자본이득 추구와 더불어 시황변동에 따른 주식 편입비 전략을 병행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기본적 포트폴리오는 업종 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 업종대표주뿐만 아니라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 병행		

		■자산배분 전략 기본적으로 주식편입비 90%이상 유지하며 장기 자본이득 추구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주식 편입비 조정 (최저 편입비 60%) ■리스크 관리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홍성수		**3. 운용전문인력** 오현정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4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8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KTOP KOSPI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2)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6호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생략)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6호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생략, 현행과 동일)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6.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신설)**	**제2항** 6.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

	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17일 1)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2)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3.64%**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85%**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3.6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85%**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명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 제2호 [채권]